

#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

2019.9.1부 시행

## 제6장 전공분야와 논문지도교수

### 제18조(전공분야의 선택과 변경)

- ① 박사과정생은 전공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, 전공분야는 제3조의 6개 계열별 영역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박사과정생은 전공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전공분야의 변경으로 인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③ 박사과정생이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후에 전공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전항의 경우 주임교수는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전공분야의 변경을 허가한다.

### 제19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위촉)

- ①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교수로,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20조 및 본 운영지침 [별표 3]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주임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한다. 단,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 학기에 논문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2명을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는다.
- ④ 위촉된 교수는 신청학생과 면담하여 그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지도교수 수락서를 작성한 뒤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20조(논문지도교수 연구활동에의 참여)

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연구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논문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는 박사과정생 1명 이상을 공동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.

### 제21조(논문지도교수의 변경)

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임교수 및 새로 신청한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 [별표 3] 강의 및 논문지도교수 자격 기준

구분	자격기준
논문지도교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인문 사회계열 : 최근 3년 이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게재실적 보유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(SCI 및 A&amp;HCI 논문 1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4배로 인정함)</li><li>2. 자연과학·공학·의학계열 : 최근 3년 이내 SCI(E)급 이상의 학술지에 년평균 1편 이상의 논문 게재실적 보유자(임상교수제외)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학술서적실적 보유자</li><li>3. 예체능계열·시, 소설 등 창작분야 :인문사회계열의 학술지게재실적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, 창작물(전문학술서적 포함)등의 실적보유자</li><li>4. 논문 중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으로 인정하며 공동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제7조 1항 별표 2를 적용함.</li><li>5.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상기 실적 이상의 요건을 대학원에 제출하는 학과는 학과에서 제출한 요건을 기준으로 함,</li><li>6.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, 특별한 사유로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논문지도교수로 추천한 교수</li></ol>